

	<h2 style="margin: 0;">학생단체등록 및 운영 규정</h2>	제정일자	1985. 3.16
		개정일자	2016. 8. 1
		페이지	1-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격도야와 교양취미를 통한 정서활동 및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조성하고자 각종 학생단체를 인정하고, 이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의 정의) 모든 학생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그 기능별로 학생회 산하부서에 소속되어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등록요건) 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조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여야 할 것
2. 소속 단체의 설립의 목적과 이념에 충실한 30명 이상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정규회원을 가질 것
3. 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
4. 설립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
5.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락을 받을 것

제4조(등록절차) ① 단체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2. 1, 2012. 2. 1, 2016. 8. 1)

1.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소정 양식)
2. 단체명, 회칙 또는 규약
3. 서약서(소정 양식)
4. 임원 및 회원 명단
5. 1년 사업계획서 첨부한 등록신청서
6. 비품대장 사본

② 모든 단체는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등록 하여야 한다.

1. 지도교수 취임승낙서(소정 양식)
2. 단체 재등록신청서(소정 양식)
3. 회칙 또는 규약의 변동사항
4. 임원 및 회원명단
5.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6. 신년도 사업계획서

제5조(승인) 제4조에 의한 단체등록 신청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한다.(개정 2009. 2. 1, 2012. 2. 1, 2016. 8. 1)

제6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단체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단체의 임원은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된다. 단,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교학처에 제출한다.(개정 2012. 2. 1, 2016. 8. 1)
2. 임원의 임기는 학생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3.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보선하여 그 결과를 교학처에 제출한다.(개정 2012. 2. 1, 2016. 8. 1)

제7조(지도교수) 단체의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 학생단체에는 지도교수를 두며, 학생단체연합회는 지도교수를 1인 이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도교수는 단체로부터 추대받은 전임강사 이상의 본교 교직원으로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 이상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4. 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져야 한다.
5. 지도교수에게는 소정의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지도교수가 해외 연구 및 출장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장에게 추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1, 2016. 8. 1)

제8조(재정) 단체의 재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단체의 운영 및 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1, 2016. 8. 1)
- ② 단체지원을 위한 학생회 보조금은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배정하되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본교의 설립 목적과 전통확립에의 부합성
 2. 전교생에 대한 학술적, 교육적 공헌
 3. 과거 2년간의 행사 실적
 4. 소속 단체의 회원수
 5. 당해년도 행사계획의 건전성 및 규모
- ③ 단체의 성격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회 보조금 배정 심의에서 제외된다.
 1.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단체
 2. 다른 학교와 연합적으로 구성되어 본 대학 단체로서의 특수성이 없는 단체
 3. 단일 학과의 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4. 과거 2년간의 행사 실적이 미진한 단체
 5. 소속 회원이나 단체의 활동이 학칙 및 본 규정을 위반한 단체
- ④ 단체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소속단체의 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16. 8. 1)

제9조(단체의 활동) ① 등록된 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모든 행사는 제11조에 의한 집회신고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16. 8. 1)
- ③ 집회에 관한 게시물 및 현수막, 프로그램, 팸플렛, 티켓 기타 유인물의 제작은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인쇄하고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16. 8. 1)

제10조(집회신고서 제출절차) 학생단체 단위의 학생행사가 있을 경우, 학생단체 장이 집회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후 교학처에 제출한다.(개정 2012. 2. 1, 2016. 8. 1)

제11조(집회신고서 제출기일 및 구비서류)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집회는 교내의 경우 7일 이내, 교외의 경우 15일 이내에 교학처에 집회 신고서(소정 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16. 8. 1)

제12조(간행물의 발간승인 신청) 학생단체에서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의 간행물은 사전에 원고내용을 지도교수 경유,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배부 전에 각2부씩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16. 8. 1)

제13조(단체의 등록 취소) 등록된 단체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장은 단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 2. 1, 2012. 2. 1, 2016. 8. 1)

1. 학칙에 위배되는 경우
2. 제1조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3. 기존단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 또는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를 위하여 활동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운영상 재정 부담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1년간 행사 실적이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7. 기타 학생활동으로 적합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4조(단체의 비품관리) ① 각 학생단체 비품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비품관리에 대해서는 학생단체의 장이 책임을 진다.

② 각 학생단체의 비품은 학교 업무상 필요시 대여해 주며, 비품을 단체활동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 할 때에는 학생회 보조금 및 학교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은 회수하고, 단체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8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